

의안 번호	748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10. 2. 9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0. 2. 11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0. 2. 24(수)

2. 제안이유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중 소매업의 등록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신설(안 별표1)

- 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신설
 - 신고 수수료 : 1건 20,000원
 - 변경신고 수수료 : 1건 10,000원
- 나. 석유판매업관계
 - 주유소 등록 : 1건 20,000원
 - 용제판매소 등록 : 1건 10,000원
 - 일반판매소 신고 : 1건 10,000원

4. 근거법규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1조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5. 개정조례안 및 신규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없음(2010. 1. 18 ~ 2010. 2. 8)

7. 검토의견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및 석유판매업 중 소매업의 등록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에 대한 신고 수수료는 건당 2만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하고
- 석유판매업관련 수수료는 주유소 등록 2만원, 용제판매소 등록과 일반 판매소 신고가 각각 건당 1만원 등으로 신설 규정한 것으로 이에 특별한 이견(異見)이 없음.

라. 다만, 이에대한 수수료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졌는지 이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관 련 법 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 <개정 2008.2.29>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